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진로교육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04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6.
3. 회부연월일 : 2024. 7.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의 중단 등으로 누구보다도 진로교육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 정의 등에 기존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학생에게</u>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u>학생의</u>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게</u> ----- <u>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u>학생에게</u>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제2조(정의) ----- -----. 1. ----- ----- <u>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u> ----- ----- -----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생략)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생략)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학생등에
게-----

-----.

3. -----학생등이-----

-----.

4. -----학생등이-----

-----.

5. (현행과 같음)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등은-----

-----.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생략)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③ -----학생등의-----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
-----학생등의-----

-----.

②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
-----학생등이-----

-----학생등에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u>학생</u>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u>학생의</u>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u>학생</u>에 대한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u>학생</u>들에게-----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① -----<u>학생</u>등의----- <u>의</u>----- ---<u>학생</u>등에----- -----. ② (현행과 같음)
---	--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¹⁾, 그 대상을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조항 등에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법」 제2조제2호²⁾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학교 밖

1) 「진로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 등은 「학교밖청소년법」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023. 12.)에 따르면 2022년 학교 밖 청소년은 167,925명으로 전체 청소년 중 3.0%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업중단자의 경우 총 52,981명이었음. 참고로, 실태조사는 최근의 학업중단자 수 추이 변화를 실태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단위: 명,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규모 (추정)	246,694	244,617	251,996	244,191	231,823	145,818	167,925
비율	3.9	4.0	4.2	4.2	4.1	2.6	3.0

주) 비율은 전체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023.12.)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학교급별 최근 5년간 학업중단자 수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학업중단자 수		50,057	52,261	32,027	42,755	52,981
학교급	초등학교	16,422	18,366	11,612	15,389	19,415
	중학교	9,129	10,001	5,976	7,235	9,585
	고등학교	24,506	23,894	14,439	20,131	23,981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023.12.)

참고로, 이미 「진로교육법」 제5조제2항³⁾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에 따르면 동 법률에 따른 진로교육이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 현행 규정만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교육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음.

또한, 「학교밖청소년법」 역시 직업체험과 취업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⁴⁾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도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3)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필요성·수요도 평가 결과 2023년 진로탐색 체험 정책이 수요도 5순위로 평가되었고 직업교육·훈련 정책이 6순위를 기록한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진로 교육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필요성/수요도 평가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15	검정고시 준비 지원	건강검진 제공	진로탐색체험	직업교육·훈련	진학정보 제공
	2.87	2.82	2.78	2.76	2.75
2018	검정고시 준비 지원	건강검진 제공	진학정보 제공	각종 질병치료	진로탐색체험
	2.95	2.94	2.88	2.88	2.86
2021	교통비 지원	건강검진 제공	검정고시 준비 지원	진학정보 제공	진로탐색체험
	3.20	3.05	3.04	3.03	3.02
2023	교통비 지원	청소년활동 바우처	진학정보 제공	검정고시 준비 지원	진로탐색체험
	3.33	3.19	3.18	3.18	3.12
구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2015	각종 질병치료	학습진로멘토	각종 고민상담	학생→청소년 변경	체육활동 지원
	2.72	2.64	2.62	2.61	2.60
2018	청소년활동 바우처	청소년전용 일자리	직업교육·훈련	각종 고민상담	학습진로멘토, 진로/직업 통합프로그램
	2.86	2.84	2.82	2.79	2.78
2021	각종 질병치료	청소년활동 바우처	대학 진학 및 입시 상담	직업교육·훈련	진로/직업 통합프로그램
	3.00	2.99	2.97	2.94	2.92
2023	직업교육·훈련	대학 진학 및 입시 상담	직업훈련 참여 /자격증 취득 등 자립수당 지원	건강검진 제 공	각종 질병치료 /청소년 자유 공간 제공
	3.10	3.08	3.08	3.04	3.02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023.12.)

이에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 지원의 법적 토대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교육·훈련과 직업탐색체험 등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목적규정에서 타 법률의 근거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⁵⁾,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는 안 제1조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조(목적) 이 법은 <u>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게</u>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u>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u>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u>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법제 기준과 실제」(2024), 국회 법제실, p.241.

목적 규정에 있어서는 약칭이나 부가적 설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다른 법률 또는 해당 법률의 근거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그 목적규정에 “「○○법」 제○조에 따라”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도 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행 「진로교육법」 제5조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학령기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의 제공과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의 대상에 포함하여 차별없는 진로교육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6